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5일
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원태, 남창진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송재혁, 아이수루, 유정희,
, 윤기섭, 이용균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임종국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,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생해,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,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 침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,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조항 규정함 (안 제4조 제1항)
- 나.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함 (안 제7조)
- 다.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편의지원 조항 신설함 (안 제9조의4)
- 라.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”을 “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

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제9조로 하며, 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6조의2를 제7조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의2)의 제목 “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”을 “(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-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
 2.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
 3.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
 4.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 5.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,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2항제4호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특수교육”을 “제9조의 4에 따른 특수교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<u>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</u>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<u>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</u>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6. <u>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</u>
6. (생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<u>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</u>) <u><신설></u>	제7조(<u>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 등</u>) ① <u>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② <u>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①·② (생략)	③·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 ~ 제8조의3 (생략)

<신설>

④ 교육감은 제3항-----

-----.

제8조 ~ 제9조의3 (현행 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와 같음)

제9조의4(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

편의 지원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
2.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
3.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
4.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5.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

	<u>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 상담,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제9조 · 제10조</u> (생략)	<u>제10조 · 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
<u>제11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</u>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 4. <u>제9조에</u>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5. <u>특수교육</u> 관련서비스 지원 6. (생략)	<u>제12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①</u>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10조</u>----- ----- 5. <u>제9조의 4에</u> 따른 특수교육 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 ~ 제14조</u> (생략)	<u>제13조 ~ 제15조</u>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용어를 수정(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→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)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(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)를 신설하고, 제6조의2를 제7조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고, 제9조의4(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)을 신설하며, 그 외는 신설 조문 등을 고려하여 조문 위치 등을 정비한 것임
- 신설 조문의 내용 등을 통한 비용발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부서(특수교육과)에 문의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편성(장애학생 인권지원단,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편의지원사업 등¹⁾)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보조공학기기 지원 200,420천원, 장애학생가족 지원사업 25,080천원,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1,432,424천원, 통학비지원 1,496,000천원, 통학차량 실무사 인건비 지원 1,536,016천원 등(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서, 특수교육과)